



본인은 DCS에게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에게 자녀 지원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DCS가 본인을 위해 징수된 모든 자녀 지원 지급금(수표, 송금 서비스, 계좌 이체 등)를 허용하고 보증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현재 주 또는 지역 법원, 주 또는 지역 아동 지원 집행 기관을 통해 자녀 지원 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법원 또는 기관에서 DCS에 모든 지급금을 보내길 원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와 함께 동봉된 **보조 없는 지원 집행 정보** 양식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 DCS는 본인 가정의 자녀가 빈곤층 가족 임시 지원(TANF), 지역 TANF 또는 장애 자녀 가족 지원(AFDC)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연간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DCS는 연방 회계 연도에 따라 케이스 한 건 대해 \$550의 아동지원금을 지급한 후 징수된 자녀지원금으로부터 이 수수료를 보관(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합니다. 케이스가 두 건 이상일 경우 \$550가 지급된 각 케이스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TANF, 지역 TANF 또는 AFDC를 받은 경우 공공 지원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선서진술서 또는 지원 기록 인증 사본 등의 근거를 DCS에 제출해야 합니다. DCS는 본인이 근거를 제공할 때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35를 지불하는 것이 본인의 가정에 부담이 된다면, 본인은 위원회 회의 요청을 통해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DCS가 집행을 위해 본인의 케이스를 다른 주로 이관하는 경우 다른 주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는 지원 지원금의 일부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DCS는 비양육 부모에게 본인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4. 본인은 DCS에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DCS는 사회보장법 IV-D항에 정의된 자녀 지원 집행 목적으로 이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합니다.
5. DCS는 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아동 지원 부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6. DCS는 자녀 지원금을 보류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인디언 부족, 부족 소유 사업 또는 인디언 소유 사업체에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된 소득으로부터 자녀 지원금을 보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족과 DCS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DCS는 부족에게 본인의 자녀 지원 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7. DCS는 본인의 자녀 지원 명령을 워싱턴 주 지원 레지스트리(WSSR)에 입력합니다.
8. 비양육 부모가 WSSR을 통해 자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본인의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본인의 케이스는 WSSR에 보류됩니다.
9. DCS는 연방 및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사례에 징수된 자녀 지원금을 본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DCS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DCS가 현재 아동 지원금을 받은 달에 적용합니다.
  - b. DCS가 현재 아동 지원금을 본인에게 보냅니다. (비양육 부모가 하나 이상의 자녀 지원 명령을 받았고, 징수금이 현 지원금 명령과 대비해 부족할 경우 DCS는 케이스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징수금을 분배합니다.)
  - c. 본인이 한 해 동안 \$550의 자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AFDC, TANF 또는 Tribal TANF 자금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의 자격으로 받지 못한 경우, 연간(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의 수수료를 보류합니다.
  - d. 1개월간의 현재 자녀 지원금을 초과하는 징수금을 기한이 경과한 아동 지원금(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e. 과거에 TANF 또는 AFDC를 받은 경우 DCS는 기한이 경과한 자녀 지원금을(국세청(IRS)에서 지급한 금액 제외) 다음의 순서로 배분합니다.
    - (1) 첫째, 해당 주에 할당되지 않은 본인에게 할당된 기한이 경과한 지원금.
    - (2) 둘째, 해당 주에 일시적으로 할당된 기한이 경과한 지원금.
    - (3) 셋째, 본인 자녀의 의료 지원금에 대한 기한이 경과한 지원금.
    - (4) 넷째, 공적 지원 할당에 의해 해당 주에 영구적으로 할당된 기한이 지난 지원금.
    - (5) 다섯째, 주정부에 할당된 의료 지원금.

10. IRS에서 받은 징수금은 기한이 경과된 지원금에 항상 적용됩니다. IRS으로부터의 지급금은 다음 순서로 분배됩니다.
  - a. 첫째, 영구적으로 할당된 기한이 지난 재정적 지원금.
  - b. 둘째, 임시로 할당된 기한이 경과한 재정적 지원금.
  - c. 셋째, 영구적으로 할당된 기한이 지난 의료 지원금.
  - d. 넷째, 해당 주에 할당되지 않은 본인에게 할당된 기한이 경과한 지원금.
11. WAC-388-14A-2037에서 영구적으로 할당된 체납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C 388-14A-2038에서 임시로 할당된 체납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은 DCS에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a. DCS가 실수로 본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 b. 비양육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받은 경우(초과 지급이라고도 함).
13. DCS는 추가 통지 없이 향후에 지급될 자녀 지원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관하여 초과 지급금 및/또는 오류로 인해 지급된 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하며 RCW 26.23.035(3)에 의거합니다. 본인은 DCS가 상계를 통해 지급금을 회수하기 전에 본인에게 연락할 것을 본 신청서의 1페이지에서 서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S는 향후 연락을 통해 본인으로부터 상계를 위한 허가를 득하거나 본인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를 통해 지급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CS에서 상계를 통해 회수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 a. DCS는 향후 지원금 중 최대 10%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b. DCS는 향후 기한이 경과한 지원금 중 최대 100%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4. DCS는 RCW 74.20A.270에서 허용하는 기타 징수 조치를 통해 초과 지급금 및/또는 오류로 인해 본인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DCS를 통한 자녀 지원금 수령을 중지한 후에도 적용됩니다. DCS가 이 방법을 선택한 후,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립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DCS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고용주, 제삼자 또는 조직에 **소득 원천징수 명령을 보냅니다.** 이 명령/통지는 고용주, 제삼자 또는 조직이 본인의 소득, 수입 및 자산에서 오류로 인해 지급된 지급금 및/또는 초과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b. 본인의 부동산 또는 자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c. 26.09, 26.18, 26.23장, 및 74.20 RCW에 의거한 DCS 징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RCW 26.23.110는 DCS가 특정 상황에서 본인으로부터 자녀를 대신하여 환급되지 않은 의료 비용(WAC 388-14A-1020에 정의된 본인부담금, 공제금 및 보험료 포함)이 있을 경우 이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DCS는 다음의 수단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a.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채권에서 상계합니다.
  - b.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받아야 하는 지원금에서 1년 이하의 기간동안 매월 50% 이하의 선에서 상계합니다.
  - c. 본인에 대한 신규 징수 케이스를 열고, 면허 정지를 제외한 기타 DCS 징수 수단을 사용합니다.
16. 본인의 지원금 명령에 따라 본인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요청할 경우 DCS는 해당 요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는 본인의 지원금 명령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자녀 지원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매달 보험료에 대한 현금 의료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7. DCS는 자녀 지원금 명령에 대해 본인 또는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대변하기 위해, 본인은 자녀 지원금 명령에 대한 모든 청문회나 법정 출두에 참석해야 합니다. 심리에 참석 및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 판사는 본인의 자녀 지원금 명령에 대해 DCS 또는 제삼자가 요청한 사항을 추가 통지 없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18. DCS는 계좌 이체(EFT)를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에 지원 지급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좌 이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DCS는 DCS 직불카드라고 하는 지급금이 입금된 Visa 직불카드를 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DCS에서 본인을 DCS 직불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DCS는 은행 계좌가 아닌 카드로 지원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CS에 의해 직불카드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 계좌나 DCS 직불카드로 지원 지급금이 입금됩니다. DCS 직불카드는 VISA 가맹점 또는 ATM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결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기타 지급금 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는 800-468-7422로 전화하거나 [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http://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DCS는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서면 통지할 수 있습니다. DCS 해당 통지를 최종 기록된 본인의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1. DCS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원 지급금을 DCS에 보냅니다. 본인은 해당 지급금을 DCS에 8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2. 본인의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하여 다음 중 하나를 지급받을 경우 즉시 DCS에 알립니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가 받는 혜택 지급금에 대한 지원 지급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급금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크레딧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인이 아래 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a. 7월 1일 1990년, 이후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노동산업부)가 지급한 지급금 또는 자가 보험자가 지급한 근로 보상금.
  - b. 7월 1일 1990년, 이후 지급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관리부)가 지급한 장애 지급금 또는 퇴직 급여.
  - c. 7월 24일 2015년 또는 그 이후에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재향군인회)가 지급한 지급 분담금.
3. 다른 사람 또는 대행사에게 자녀 지원금을 수급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를 DCS에 알리십시오.
4. 본인 또는 자녀의 주소 변경 시, 이를 DCS에 알리십시오.
5. 본인의 케이스에 지정된 자녀의 지원 요건 또는 양육권 변경 시, 모든 자녀 지원금 명령 관련 문서 사본을 DCS에 보내십시오.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DIVISION OF CHILD SUPPORT (아동 지원국)

PO BOX 11520

TACOMA WA 98411-5520

\_\_\_ 시내 통화 \_\_\_\_\_

\_\_\_ 시외 통화 \_\_\_\_\_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TTY/TDD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http://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

인종, 피부색, 국적, 신념,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로 인해 고용,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됩니다. 본 양식은 요청 시 기타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